

보도자료

(농림부)

- 제공일 : 2005. 9. 1.
- 제공자 : 농관원 유통지도과
- 과 장 : 송 인 호
- 사무관 : 구 돈 회
- 전 화 : (031)446-6060

이 자료는 2005년 9월 2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목 : 추석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 단속 강화
- 단속원 468명 대거 투입, 제수 및 선물용품 집중단속

□ 정부는 추석 농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,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.

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의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생산농업인 보호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단속원 468명을 동원하여 9월 1일부터 9월16일까지 대대적인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.

< 주요단속품목 >

- 제수용품 : 꽃감, 대추, 고사리, 도라지, 쇠고기 등
- 선물용품 : 한과세트, 다류세트, 축산물 건강선물세트, 지역 특산물 등

□ 이번 단속은 대도시 소비지 위주로 백화점, 대형업체는 물론 재래시장에 이르기까지 원산지표시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. 상습적·조직적인 대형 위반업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.

- 이와 더불어 최근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수입 찌쌀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냉동고추의 원산지 둔갑행위도 철저히 단속해 나간다.
- 농산물품질관리원은 “판매자는 판매할 때 반드시 원산지표시를, 소비자는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하다”며,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현장을 목격하면 부정유통신고(1588-8112)를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[참고자료]

추석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계획

1. 단속배경 및 중점단속 대상

- 농축산물 유통량이 늘어나는 민속명절 추석(9.18)을 맞이하여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될 것에 대비, 전국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 일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

※ 추석대비 원산지 위반 현황 : ('02) 1,041건 → ('03) 1,059 → ('04) 1,034

□ 제수용, 선물용, 지역특산품으로 구분 중점단속 추진

- 제수용 농축산물 : 쇠고기 · 돼지고기 · 고사리 · 도라지 · 대추 등
- 선물용 농축산물 : 갈비셋트 · 과일바구니 · 건과류 · 선물셋트 등
- 지역특산품 : 산지지명도를 도용하여 원산지 허위표시가 많은 품목
- 쌀(경기), 마늘(서산 등), 고추(영양 등), 인삼(금산 등)
- 수입급증품목 : 수입전쌀과 가공용수입쌀, 수입냉동고추 등

□ 주요단속대상

- 대도시 백화점, 대형업체와 재래시장과 제조·가공업체 등

2. 일제단속계획

총괄계획

◇ 단속기간 : 2005. 9. 1~9. 16(16일간)

◇ 단속반 편성 · 운영

- 228개반 456명(특별사법경찰관 400명 포함) 이상
- 도청소재지 이상 대도시소비지에 기동단속반과 정예 명예감시원을 집중 투입

- 농산물 원산지 단속 강화로 추석 성수품 부정유통행위 차단
 - 단속 가능인력을 최대한 투입하여 228개 단속반 편성·운영
 - 대도시지역은 기동단속반 외에 인력을 차출하여 집중단속 추진
 - 자체실정을 감안 출장소 인력을 차출하여 전체 단속반의 50%이상을 집중 투입
 - 상습위반자 등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한 단속활동 전개
-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단속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산
 - 관세청 통관정보 EDI(전자문서자료교환)시스템 및 EWS(원산지 단속조기경보시스템)를 최대한 활용 정보수집
 - 전국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단속정보를 입수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계통 보고하여 신속히 전파될 수 있도록 조치
 - 취약품목 및 업소는 집중단속 실시
- 원산지 단속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보도추진으로 부정유통예방
 - 추석대비 일제단속 실시배경 및 단속계획 등을 TV, 신문, 라디오, 지역 소식지 등을 활용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사전예방
 - 신고명예감시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재래시장 등에 집중적으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 활동 전개
 - 대형부정유통, 성수품목 등에 대한 적발현장 동행취재 보도
- 명예감시원 참여를 통한 원산지 부정유통 민간 감시기능 확대
 - 생산자·소비자단체소속의 정예 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 추진
 - 부정유통신고 전용전화(1588-8112) 및 인터넷(농관원 홈페이지)을 통한 신고 활성화 도모
 - ※ 신고 또는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(5~100만원)

3.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합동단속계획

□ 단속기간 : 2005. 9. 1 ~ 9. 16(16일간)

○ 단속일정은 상호협의 후 결정

□ 단속반 편성·운영

○ 12개반 48명(농관원 1, 수과원 1, 명예감시원 각 1명)

○ 반별 단속구역은 수과원 관할지역으로 함

□ 기관별 업무역할 분담

○ 농관원 : 농산물품질관리법 관련 원산지표시 단속

○ 수과원 : 축산물가공처리법 관련 판매업자 영업자준수사항, 유통기한 등

※ 2005. 8. 25. 원산지관리팀 협의(농관원, 수과원, 식검 관계자) 결과